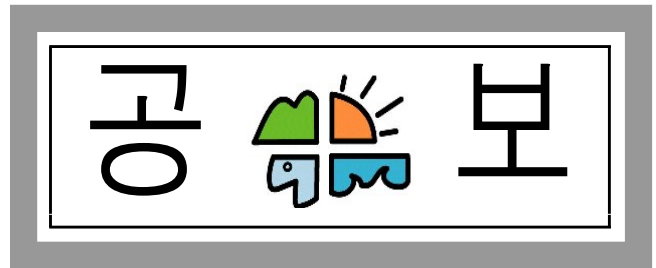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87호 2020년 9월 25일(금)

입법예고

-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

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5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

2. 개정이유

- 생산원가에 비해 하수도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공기업 재정운영이 매년 어려운 실정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하수도사용료 인상(안 별표2)

- 속초시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(2018년 기준 45.5%)에 미치지

못하는 2018년 28.3%, 2019년 30.5%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15%씩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2019년 30.52%에서 2025년 67.53% 향상시켜 재무건전성 확보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. 10.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(참조 : 하수도 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소 : 우)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/ 속초시 하수도 사업소 (하수행정팀)
- 연락처 : 033-639-2931 (FAX 033-639-2497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(033-639-29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조례 공포후 2021년 1월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2조제2항 관련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가.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.

나.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
다.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 분	사용량(톤)	단가(원) 및 적용시기				
		2021년 1월 고지분까지	2022년 1월 고지분 부터	2023년 1월 고지분 부터	2024년 1월 고지분 부터	2025년 1월 고지분 부터
가정용	1 - 10	535	615	707	813	935
	11 - 20	601	691	795	914	1,051
	21 - 30	672	773	889	1,022	1,175
	31 - 40	765	880	1,012	1,164	1,339
	41 - 50	831	956	1,099	1,264	1,454
	51 이상	902	1,037	1,193	1,372	1,578
일반용	1 - 30	649	746	858	987	1,135
	31 - 50	765	880	1,012	1,164	1,339
	51 - 100	902	1,037	1,193	1,372	1,578
	101 - 300	1,111	1,278	1,470	1,691	1,945
	301 - 500	1,389	1,597	1,837	2,113	2,430
	501 이상	1,665	1,915	2,202	2,532	2,912
대중탕용	1 - 200	601	691	795	914	1,051
	201 - 300	649	746	858	987	1,135
	301 - 500	765	880	1,012	1,164	1,339
	501 이상	858	987	1,135	1,305	1,501
산업용	단일종량제	765	880	1,012	1,164	1,339